

# 농식품부,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

## - AI 사전예방 강화 및 발생시 조기 종식 체계 구축 -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(2014. 8. 14)

### 1. 현황

◎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, 이하 농식품부)는 8월 14일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병하여 18개 시·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대응한 「AI 방역체계 개선 대책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
■ 이번 AI 발생경과 및 특성을 살펴보면, 지난 1.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18개 시·군에서 총 29건이 발생하였다.

\* 예방적 살처분, 역학관련 농가 등을 포함하면 총 212건 이 양성

■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네 차례의 AI(H5N1)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(H5N8형)로 전파속도가 느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특징이 있고,

\* 과거 : 100% 폐사, 4일간 배출 → 금번 : 20%, 7일간 (오리 실험결과, 검역본부)

- 특히, 방역 여건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발생기간이 191일(14.1.16~7.25)로 장기화되었다.

■ 정부는 AI 방역을 위해 '범정부 AI 대책본부'를 운영하였으며, 공무원, 군경 등 약 59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전국 720여 곳에 이동통제초소가 설치·운영되었으며,

■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를 발령하여 농가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고, 축산농가와 관련 차량이 등록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히 역학 농가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.

■ 또한, 가금 농가에 대한 보상방식도 정부 구매 대신 민간자율 비축을 유도하여 수급 왜곡 및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.

### 2. 대책 방향

◎ 이번 AI 개선대책은 주변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는 여건상 언제든지 AI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예방 강화, 발생 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,

■ 그간 AI 방역추진 상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함께 농업인 단체, 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,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.

■ 첫째, 철새 등 AI 유입요인에 대하여 예찰 강화 및 '위험 알림 시스템'을 운영하고,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'AI 방역관리지구'로 지정하여 기존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보완하며, 신규 축산 농가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, 실질적인 지도·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

를 구축한다.

- **둘째,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**도를 도입하여 계열사에 방역책임을 부여하는 한편, 환경 개선으로 축산 체질을 개선하고, 지자체 지도·점검 및 평가를 강화하여 **주체별 책임방역체계를 확립**한다.
- **셋째**,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,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**살처분 최소화**를 추진하고, 축산차량만 탐지, 거점소독초소에서 **소독함**으로써 **국민 불편을 최소화**한다.
- **넷째**, 농가 DB 정보 현행화, 축산차량 GPS 등록·관리 강화,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상황 종합관리 등 ICT 기반의 **역학조사·분석 및 발생 가능지역 예측체계**를 구축한다.
- **다섯째**, 방역 우수·소홀 농가를 차등 지원하는 등 **보상·지원을 구체화·현실화** 하고, 지자체의 살처분·방역 초소 운영 등에 따른 **재정부담 완화 방안**을 추진한다.
- **여섯째**, 농식품부, 지자체를 중심으로 **방역 행정체계**를 정비하고,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술 지원 조직과의 **역할 및 기능 분담**을 명확히 하며, 지자체에 **적정 수준의 현장 인력 배치**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.

### 3. 대책 내용

◎ AI 재발방지 및 발생 시 조기 종식을 위한 「AI 방역체계 개선 대책」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.

#### ① 사전 대응체계 구축

- **(철새예찰체계)** 철새 예찰을 강화\*하고, 철새

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‘**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**’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,

\* GPS 부착('13년 : 75개 → '14 : 200), 포획검사('14년 : 4천수 → '15 : 5) 등

- 철새 이동경로상 AI 발생국가와 공동연구 및 AI 예찰·발생 정보 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,

\* OIE 아태지역 AI 예찰 워크숍('14.8), 한·중·일 가축 방역 국제 심포지움('14.11) 등을 활용하여 국제 상시 공조체제 구축 방안 협의 예정

- **(방역관리지구)** 철새 군집지 인근 등을 “AI 방역관리지구\*\*”로 지정하여 농가 지도·점검·지원\*\*과 함께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보완\*\*\* 및 신규 축산시설에 대한 세척·소독시설 등 허가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\* 132개 읍·면·동 1,700농가(전체대비 35%) 35백만 수 (20%) 추정

\*\* 가금질병 컨설팅, 타 지역 이전희망농가 신축비용·입식자금 지원 등

\*\*\* 전실·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축산업허가기준을 일반지역보다 강화

#### ② 농가 등 주체별 방역능력 강화

- **(농가)**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축종별, 도축장 등 축산시설별 표준 매뉴얼\*을 마련하고 방역교육을 강화 할 계획이다.

\* 예시 : 청결·오염구역 구분, 소독요령, 가축 입식·판매 시 준수사항 등

- **(계열사)** 가금농가의 90%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계열사 소속 농가에 대하여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는 “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”를 신규로 도입하고,

## :: 집중탐구

\* 평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·지도 및 소독·예찰 실시하고 AI 발생 시에는 발생농가 소독·예찰 및 살처분 지원 등 추진

\* 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표준계약서 보완, 우수계열사 인센티브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, 지자체 통한 상시점검 등 추진

- **(환경개선)** 방역취약 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\*과 함께, 친환경·동물복지 축산 육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며,

\* 조기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자금('14년 : 1,692억 원) 지원조건 완화 검토

- **(점검·평가)** 상설 '중앙점검단'을 운영하여 방역소홀 농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강화하고,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\*를 통해 책임방역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\* 검역본부(방역센터)의 지자체 방역활동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의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는 대외공표 및 예산 차등 지원 등

### ③ AI 발생시 조기종식

- **(조기신고·발견)** 농가 임상교육, 인센티브 부여\* 등을 통한 AI 조기신고를 유도하고, 신속한 AI 발견을 위해 상시예찰의 확대\*\* 및 오리에서 AI 발생 시에는 출하·이동 전에 AI 정밀검사를 의무화 할 계획이며,

\* 조기 의심 신고농가는 양성 판정 시 10% 범위 내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

\* 상시예찰 검사확대('14년 : 13만건 → '15 : 26)

- **(방역대·살처분)**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, 방역대 설정 및 이동 통제, 살처분 최소화를 추진하되,

- 방역대는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\*으로 설정하고,

\* **(현행)** 500m·3km·10km 일률 설정 → **(개선)** 기본틀은 유지하되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

-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대내 일괄 방식에서 선별적 방식\*으로 개선하며,

\* **(현행)** 500m 또는 3km 예방적 살처분 → **(개선)**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, 방역대내 발생·신고 시기, 축종, 역학관계, 방역실태 등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실시

- 방역대내 가금 및 알은 안전성 확인 후 출하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\* 할 계획이다.

\* **(현행)** 전부 이동제한 → **(개선)** AI 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

- **(초동대응)** AI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하여 방역요령(SOP) 숙지 및 지자체의 가상방역 훈련(CPX) 대폭 강화(연 2회 → 분기 1회 이상) 하고, 초동대응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발생 시 현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.

### ④ ICT 방역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역학조사

- **(통계기반구축)**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위하여 축종, 사육규모 및 소재지 등 이외 계열화, 외국 인근로자 고용실태, 가축거래기록, 질병발생 상황, 백신접종 실태 등에 대해서도 농가 정보 DB를 구축하고, 방역지원본부 및 지자체를 통해 수시로 최신화(up-date)하고,

- **(종합상황관리)** 모든 방역기관이 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를 활용, 실시간 방역상황을 공유하고,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며,

- **(역학조사)** 부화장, 농장, 도축장 등 생산에서부

터 유통까지 이력정보를 ICT 기반 DB화하고, 이동통신 위치정보\*를 활용한 발생가능지역 예측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

\* KT-농식품부간 "Big Data 기반 가축전염병 확산대응"을 위한 MOU 체결('14.6.25)

- **(소독시설)** ICT를 활용한 거점소독시설 전광판을 설치하여,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는 초소를 운영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.

### ⑤ 농가 보상 및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

- **(보상지원 현실화)** 친환경,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하고, AI 발생농가의 폐기사료 보상을 현실화(시가의 40% → 80%)하는 한편
  -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생계안정 지원대상을 확대\*하고,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은 실제 피해액이 보상되도록 개선하며,
  - \* 닭·오리 2만수, 육계 4만수 이하 농가만 지원 → 전체농가 지원
- **(보상기준 구체화)** AI 발생농가는 20%를 삭감하되, 방역소홀 농가의 경우 추가 감액 기준\*을 세분화(건당 5~10%, 최대 80%)하고, 방역활동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범위 내에서 경감(건당 5~10%, 최대 50%)토록 하며,
  - \* AI 발생농가는 20%를 삭감하되 위반 유형별 추가감액 기준을 현행 5종에서 30여종 세분화하고 연속 AI 발생 농가 추가감액(불입)
- **(지자체 부담완화)** AI 방역비용·보상금 등 대해 방역 책임분담 원칙은 유지하되, 해외 사례 분석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, 지자체간(시도 및 시

군구간) 살처분 보상금 분담원칙(5:5) 마련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### ⑥ 방역 추진체계 개선

- **(방역행정)** 중앙의 방역정책 기능을 보완\*하고, 지방의 조직 인력을 확충\*\*하며,
  - \* 농식품부의 방역정책 총괄·기획 기능을 수행할 방역 조직 강화(현행 과단위에서 수행)
  - \*\* 시·도는 전담부서 신설, 시·군은 사육규모에 따른 적정인력 배치 추진
- **(진단·연구)** 중앙(검역본부)은 AI 최종확진 및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지방(가축위생시험소)\*은 AI 1차 검사\*\*\* 및 현장연구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.
  - \* 가축위생시험소 기능 강화와 역할 명확화를 위한 가축 위생시험소법 제정 추진(현행은 시도 조례로 운영되어 시도별 기능·조직 등이 상이)
  - \*\* 검역본부의 AI 검사·진단기능을 지자체의 가축위생 시험소로 이관
- **(단속·평가)** AI 전담부서(검역본부) 설치를 통하여 상시 단속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며,
- **(상호연계)** 합동 방역훈련(CPX) 정례화 및 중앙·지방간 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, 시·도 교차단속 등을 통한 각 기관간 연계 강화 및 AI 발생 시 대응을 효율화 할 계획이다.

### ⑦ 연구개발(R&D) 강화

- **(R&D)** AI 국내 유입, 진단 및 방역조치 등 단계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농식품부 자체연구 및 환경부·미래부 등 부처간 공동연구를 강화하고, 중국, 일본 등 주변국과의 AI 국제협력·연구를 추진할 것이다.
  - 또한, 고병원성 AI 백신 관련 연구·타당성

검토 등에 대한 사항도 추진\*하여 나갈 계획이다.

\* 선진국도 고병원성 AI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없어 백신연구는 사후대비 차원

4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◎ (기대효과) 개선대책에 따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
- 신설되는 방역관리지구를 중심으로 열악한 축사시설이 개선되고 주체별 책임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가 지도·점검 강화를 통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,
- AI 발생 시에도 조기신고를 통해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ICT를 활용한 신속한 역학조사와

철저한 방역조치로 확산을 최소화하고 조기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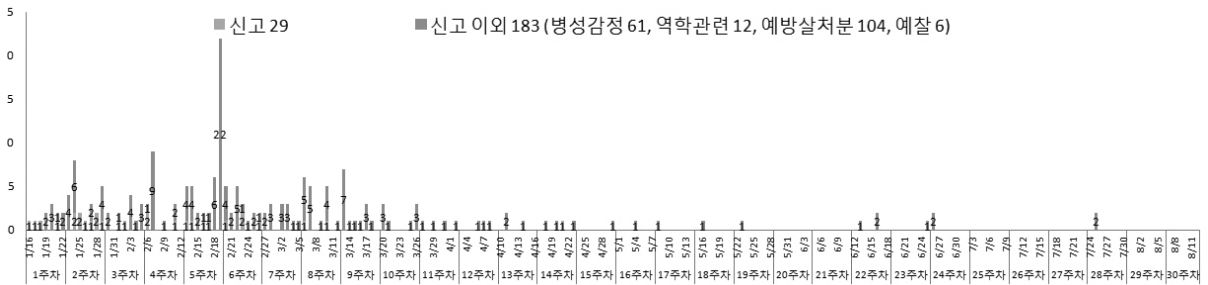
- 또한 과학적인 분석을 기초로 방역대를 조정하여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고 소독초소 운영 개선 등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◎ (법령개정) 이번에 마련한 'AI 방역체계 개선방안'은 가축전염병예방법, 축산법 등 관련 법령 개정('14~'15)을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하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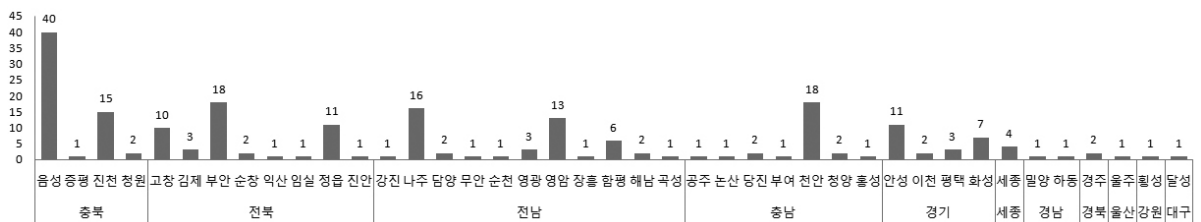
◎ (농가협조) 아울러 효과적인 AI 방역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정부·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축산농가, 계열사 등의 협조를 당부하였다.

참고 1 | '14년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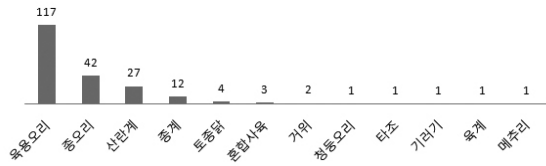
1. 일자별 발생(신고/접수일 기준, 212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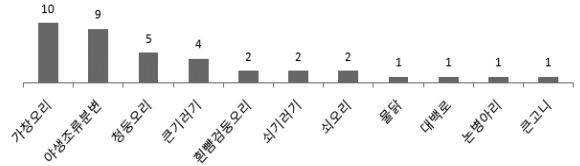
2. 지역별 발생(음성, 부안, 천안, 나주 등 11시·도)



3. 축종별 발생(육용오리, 종오리, 산란계, 종계 등)



4. 야생조류 발생(가창오리, 청둥오리, 큰기러기 등 38건)



참고 2 | 주요 시 개선방안 우려사항 및 보완책(안)

내용	기 존	개 선	효 과	우려사항	보완방안
살 처 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0m 내 전농가 무조건 살 처분</li> <li>3km는 초기 살 처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00m 내 발생 농가 중심 살 처분, 나머지는 위험성 평가·관리 후 예외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살 처분 두수 감소</li> <li>자원낭비 축소</li> <li>국민 공감대 형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속한 예방적 살 처분에 비해 초기대응 미흡 우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평시) 발생시 대응 체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장대응 중심의 CPX</li> <li>- 전문가 풀 구성·지원</li> </ul> </li> <li>(발생시) 신속한 차단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동통제, 발생농장 살 처분, 방역조치 등 완전한 차단방역</li> <li>- 살 처분(24시간 내) 실시</li> <li>- 발견·신고시기, 지형, 가금종류, 시설, 역학특성, 방역실태, 평소 방역 수준 등 위험도 분석 후 예 방적 살 처분</li> </ul> </li> </ul> <p>* 지자체 판단 오류 시 중앙정부 직권 살 처분 명령(가전법 52조)</p>
이동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역대내 가금·알 무조건 이동제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역대내 가금·알 제한적 출하 허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개체 사전제 거</li> <li>자원낭비 축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금·알 이동 시 수평전파 우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상·정밀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</li> <li>가금 운송전용차량 이용</li> <li>방역대내 및 최단거리 도축장</li> <li>알은 가공용(열처리)만 허용</li> </ul>
소독 및 초소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적 모든 차량 소독시설 및 초소 설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발생지역, 전 파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불편 감소</li> <li>방제비용 감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파 우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군별 거점 소독시설 설치, 축산차량 소독 실시</li> <li>지역별·시설별·차량별 세척·소독 실시요령을 마련 관리</li> <li>상시예찰 규모 확대</li> <li>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을방역관리지구로 지정·특별관리</li> </ul>
방역 관리 지구 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없음</li> <li>* 특별관리기간은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도입 특별관리</li> <li>* 철새도래지, 밀집지역, 과거 발생지역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집중관리로 사전예방 및 발생 감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규제강화</li> <li>산업피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진입불가 보다는 강화된 허가기준 제시</li> <li>* 기존 농가는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</li> <li>희망시 정책자금 지원, 이전유도</li> </ul>

:: 집중탐구

내용	기 준	개 선	효 과	우려사항	보완방안
계열사 책임 관리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도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열사 책임 의식 강화</li> <li>사전예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가에 전가 우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자체 등에서 정기 지도·점검</li> <li>계열사 불공정행위·방역의무 책임전가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</li> <li>인센티브 제공 및 과태료 부과</li> <li>방역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계약서에 포함</li> </ul>
사육 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역시설 낙 후, 친환경·동물복지 고려가 미흡한 사육체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축사시설 현대화·리모델링 추진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근본적체질개선으로 질병 사전예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속적 추진 의지 의심</li> <li>실제 적용 가능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친환경축산대책 지속 추진</li> <li>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시설 기준 마련·보급</li> <li>시설 취약 농가 리스트 구축, 현대화사업 우선지원</li> <li>계열사가 시설우수농가와 계약토록 지도</li> <li>계열사가 시설 미비 농가와 계약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</li> <li>동물복지 인증대상 확대('14: 육계→'16: 오리, 메추리 등) 및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등 지원 강화</li> </ul>
KAHIS 등 ICT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AHIS, GPS 차량 관리 등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IT 활용 체계 정착(현행화, 고도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확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보의 정확성 유지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역지원본부, 지자체 전담인력 지정, KAHIS 정보 현행화</li> <li>정보수집대상을 소규모농장 확대(300m<sup>2</sup>→ 전체 축산농가)</li> <li>GPS 장착 차량만 축산농가·시설에 출입토록 의무화 추진</li> </ul>
보상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상과 방역 책임 연계가 부족 및 보상금 현실화 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 및 소홀 농가 차별강화</li> <li>지급기준 현실화</li> <li>* 소득안정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 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수 및 소홀 농가 책임강화</li> <li>피해보상 현실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가의 수용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격합리화를 위해 대표가격 산정체계 구축 및 전문연구 용역 실시 후 현장 적용</li> <li>동물복지, 친환경 등 가축 및 생산물에 실제가격 지원</li> </ul>



### 참고 3<sup>1</sup>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개편방안(시행령 개정)

구분	현행	개선	
양성농장	20% 감액	현행 유지	
추가 감액 기준 (양성농장에 한함)			
축산업 허가·등록	-	미등록·미허가(10% 감액)	
사 전 예 방	차단방역 기준 (Biosecurity)	-	소독기록부 미비치(5% 감액)
		20% 감액	소독 미실시(5% 감액)
		-	소독액 미교체(5% 감액)
		-	출입기록부 미비치(5% 감액)
		-	출입기록 누락(10% 감액)
		-	농장 전용의복, 신발 등의 미비치 및 불결(5% 감액)
		-	축사 파손방치*(5% 감액) * 쥐 등 출입 방치
		-	사료 잔존물 방치(5% 감액)
		-	축사 내외부 불결*(5% 감액) * 먼지 등 비산
		-	축사 분변 미적정 처리(5% 감액)
		-	의무방역 교육 미참석(5% 감액)
		-	야생동물 방지대책(예; 구서대책) 미시행(5% 감액)
		-	기타 차단방역 기준 미이행 (5% 감액)
		방역시설 기준	-
	-		소독시설 미설치(5% 감액)
-	신발소독조 미설치(5% 감액)		
-	차량소독조 미설치(5% 감액)		
-	울타리·담장 미설치(5% 감액)		
-	외부인 출입금지 미표시(5% 감액)		



:: 집중탐구

구분		현행	개선
	방역시설 기준	-	야생조수류 침입 차단장치 미설치(5% 감액)
	적정 사육밀도 유지	-	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분은 보상금 미지급
신고	의심축 신고	신고지연 (20~60% 감액)	신고지연/미신고(50% 감액)
	외국인 근로자	미신고 (80% 감액)	단순미신고 · 소독등 미이행 · 교육미실시는 10% 감액 (단, 가축전염병 발생과 연계시 60% 감액)
	해외 출입국 신고	소독등 불이행 (80% 감액)	
	출생 등 신고	미신고 (20% 감액)	현행 유지
발생 시 조치	검사 등 명령 이행	4개 불이행시 60% 감액	불이행 (5% 감액)
	역학 조사 협조	3개 불이행시 40% 감액	불이행 (5% 감액)
	소독 실시	2개 이하 불이행시 20% 감액	불이행 (5% 감액)
	이동제한 준수		불이행 (5% 감액)
	반복 발생 농가	-	방역 소홀로 동일 농장주 · 농장에서 연속발생 시 추가 감액 (단, 시가 발생하여 종식되기 전까지 2회 발생 시 80% 감액)
	명령 불이행	-	가축방역관 명령(방사 금지 등) 불이행시 추가 감액
인센티브	평시방역 우수농가	-	감액 경감 (10% 이내)
	평시 가축출입기록 및 보고 우수농가	-	감액 경감 (10% 이내)
	평시 전화 예찰 협조 우수농가	-	감액 경감 (5% 이내)
	조기신고농가	-	감액 경감 (10% 이내)
	우수방역 인증농가	-	감액 경감 (10% 이내)
	최초 신고자 (시·군 별)	-	포상금 지급

\* 가축전염병예방법, 동법 시행령 별표 1 및 고시 개정사항

\* 기존 시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비 최소 20% 지급규정은 폐지

\* 양성농가의 감액 경감은 추가 감액된 부분(최대 80%)에 한해서만 경감을 받을 수 있음